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국가세무총국**  **소형**∙**저이윤 기업 기업소득세 반액징수범위 확대**  **관련문제에 관한 공고** 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23호  국무원은 소형∙저이윤 기업발전을 지지하는 과세특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<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> 및 그 실시조례, <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소형∙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>(재세[2014] 34호)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부의 협상, 동의를 거쳐 소형∙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유관문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  1.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소형∙저이윤 기업(실제과세와 인정과세 방식을 취하는 기업을 포함)은 규정에 따라 소형∙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.  소형∙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기업소득세를 20%로 감액 징수(이하 ‘세율인하정책’)하는 것과, 재세[2014] 34호 문건이 규정한 우대정책(이하 ‘반액과세정책’)을 포함한다.  2.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소형∙저이윤 기업이 기업소득세에 대해 중간예납과 연도 말 확정신고를 할 때 규정에 따라 스스로 소형∙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고 세무기관의 심사,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. 단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제출할 때 기업의 재직인원, 자산총액 상황도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비안해야 한다.  3. 소형∙저이윤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 할 때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  (1) 실제과세방식을 취하는 소형∙저이윤 기업은 전 납세연도에 소형∙저이윤 기업조건에 부합하며 연도 납세소득액이 10만 위안(10만 위안 포함)보다 적을 경우, 금년도 실제 이익액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형식을 채택하고 중간예납 할 때 실제 이익누계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, 소형∙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받는다; 10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, 반액과세정책을 받을 수 없다; 금년도 상반기 과세소득의 분기(또는 월) 평균액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 할 때, 소형∙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.  (2) 정율 과세하는 소형∙저이윤 기업은 전 납세연도에 소형∙저이윤 기업조건에 부합하며 연도 과세소득이 10만 위안(10만 위안 포함)보다 적을 경우, 금년도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 할 때 과세소득이 누계하여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; 10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, 반액과세정책을 받을 수 없다.  정액 과세하는 소형∙저이윤 기업은 현지 주관세무기관이 상응한 정액조정 후, 본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.  (3) 금년에 신설한 소형∙저이윤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할 때 실제 이익액 또는 과세소득이 누계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,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;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, 반액과세정책의 혜택을 정지한다.  4. 소형∙저이윤 기업이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만 중간예납할 때 받지 않았다면, 연도 말 확정신고 시 통일적으로 계산하여 받는다.  소형∙저이윤 기업이 중간예납할 때 특혜정책을 받았지만 연도 말 확정신고 시 기준규정을 초과한다면,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한다.  5. 본 공고에서 말하는 소형∙저이윤 기업이란 <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> 제92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을 지칭한다. 그 중 재직인원과 자산총액은 <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>(재세[2009] 69호) 제7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  6. 소형∙저이윤 기업의 2014년 및 이후 연도 납세신고는 본 공고를 적용하고 기존 규정과 본 공고가 불일치할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재세[2009] 69호 문건 제8조를 폐지한다.  본 공고를 실시한 후 반액과세정책을 받지 못한 소형∙저이윤 기업이 기업소득세 중간예납을 많이 했다면, 이후 분기(월) 중간예납 할 세금에서 공제한다.   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.  국가세무총국  2014년 4월 18일 |  | **国家税务总局**  **关于扩大小型微利企业减半征收企业所得税**  **范围有关问题的公告** 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23号  　　为落实国务院扶持小型微利企业发展的税收优惠政策，根据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》及其实施条例、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有关问题的通知》（财税〔2014〕34号）规定，经商财政部同意，现就落实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有关问题公告如下：  　　一、符合规定条件的小型微利企业（包括采取查账征收和核定征收方式的企业），均可按照规定享受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。  　　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，包括企业所得税减按20%征收（以下简称减低税率政策），以及财税〔2014〕34号文件规定的优惠政策（以下简称减半征税政策）。  　　二、符合规定条件的小型微利企业，在预缴和年度汇算清缴企业所得税时，可以按照规定自行享受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，无需税务机关审核批准，但在报送年度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时，应同时将企业从业人员、资产总额情况报税务机关备案。  　　三、小型微利企业预缴企业所得税时，按以下规定执行：  　　（一）查账征收的小型微利企业，上一纳税年度符合小型微利企业条件，且年度应纳税所得额低于10万元（含10万元）的，本年度采取按实际利润额预缴企业所得税款，预缴时累计实际利润额不超过10万元的，可以享受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；超过10万元的，应停止享受其中的减半征税政策；本年度采取按上年度应纳税所得额的季度（或月份）平均额预缴企业所得税的，可以享受小型微利企业优惠政策。  　　（二）定率征税的小型微利企业，上一纳税年度符合小型微利企业条件，且年度应纳税所得额低于10万元（含10万元）的，本年度预缴企业所得税时，累计应纳税所得额不超过10万元的，可以享受优惠政策；超过10万元的，不享受其中的减半征税政策。  　　定额征税的小型微利企业，由当地主管税务机关相应调整定额后，按照原办法征收。  　　（三）本年度新办的小型微利企业，在预缴企业所得税时，凡累计实际利润额或应纳税所得额不超过10万元的，可以享受优惠政策；超过10万元的，应停止享受其中的减半征税政策。  　　四、小型微利企业符合享受优惠政策条件，但预缴时未享受的，在年度汇算清缴时统一计算享受。  　　小型微利企业在预缴时享受了优惠政策，但年度汇算清缴时超过规定标准的，应按规定补缴税款。  　　五、本公告所称的小型微利企业，是指符合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》第九十二条规定的企业。其中，从业人员和资产总额，按照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执行企业所得税优惠政策若干问题的通知》（财税〔2009〕69号）第七条的规定执行。  　　六、小型微利企业2014年及以后年度申报纳税适用本公告，以前规定与本公告不一致的，按本公告规定执行。本公告发布之日起，财税〔2009〕69号文件第八条废止。  本公告实施后，未享受减半征税政策的小型微利企业多预缴的企业所得税，可以在以后季（月）度应预缴的税款中抵减。  　　特此公告。  国家税务总局  2014年4月18日 |